

전주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20가단13177 판결 [구상금 청구이의의 소]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1나8999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20가단13177 판결

전문

원 고 A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박정혁, 양선화, 유병일, 하동규

변론종결 2021. 6. 29.

판결선고 2021. 8.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09. 8. 13. 선고 2008가소18976호 구상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95. 10. 18. D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고(변경전 상호 : E주식회사)와 7,281,078원을 보험금으로 하는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작성된 차량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연대보증서와 보증보험서류에 연대보증인으로 원고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다.

나. C이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가 위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차량대금을 지급한 후 전주지방법원 98가소30793호로 C과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는 C과 연대하여 7,281,078원 및 이에 대한 1998. 2. 3.부터 같은 해 3. 4.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시송달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판결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전주지방법원 2008가소18976호로 다시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8. 8. ‘원고는 피고에게 7,281,078원 및 이에 대한 1998. 2. 3.부터 같은 해 3. 4.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시송달 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8. 9. 9.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다시 이 사건 종전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939641 구상금 사건으로 원고를 상대로 ‘34,564,000원 및 그 중 2, 600,926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소장을 송달받은 원고는 자신이 C의 차량구매에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위 법원은 2020. 4. 21. ‘이 사건 소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이유로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2. 원고의 주장

C의 차량구매 및 보증보험계약체결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종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그 확정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사유를 가지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2항), 이는 종전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나.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이의 사유는 결국 종전 판결 변론종결 전의 사유를 주장하는 것인바, 이는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한다.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확정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 및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려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로서 그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점은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집행 불허를 구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21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나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종전 판결의 내용이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로서 그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원고로 하여금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은영